##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32 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 송재봉ㆍ김우영ㆍ황명선

김성환 · 서미화 · 황정아

박홍배 · 김정호 · 추미애

김남희 · 김동아 · 이광희

김영환 · 양부남 · 박희승

정준호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,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,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,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

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,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(안 제2조제7호·제8호, 제7조제2항제5호·제6호, 제7조의2, 제7조의3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등).

###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"소음대책사업"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항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.
- 8. "주민지원사업"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사업을 말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"소음영향도를"을 "소음영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조사의 주기·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"를 "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·특별 자치시·시: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 의 경계

2. 제1호의 지역 외의 지역: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 ·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

다만,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소음대책사업
- 6. 주민지원사업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-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
- 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
- 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
- 다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(老幼者) 시설
- 4.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
- 5. 그 밖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·지원사업의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거·교육·의료·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하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내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1. 방음시설 설치사업
- 2.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
- 3.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
- ④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

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주민복지사업: 공동이용시설(도서관, 체육공원 등) 설치, 교육문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2. 소득증대사업: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 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(이하 "소음대책 인근지역"이라 한다)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7. "소음대책사업"이란 군용비
	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
	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
	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
	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
	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8. "주민지원사업"이란 소음대
	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
	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
	사업으로 제7조의3제1항제1호
	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.
제5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・고	제5조(소음대책지역의 지정・고
시 등) ① 국방부장관은 제20	시 등) ①
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	
원회(이하 "중앙심의위원회"라	
한다)의 심의를 거쳐 <u>소음영향</u>	<u>소</u> 음영향
<u>도를</u>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	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
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,	른 경계를
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	
소음대책지역을 지정・고시하	

여야 한다.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·방법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단서 신설>

<신 설>

- 1. 특별시·광역시(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·특별자치시·시: 주민이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
- 2. 제1호의 지역 외의 지역: 촌
  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
  와 하천·도로 등의 지형지물
  의 경계
- ② ③ (현행과 같음)
- ------조사는 5년마다 실시 한다. 다만, 소음영향도에 중대 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 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 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  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및

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</u>신 설> <신 설> <u>5.</u> (생 략)

③ • ④ (생 략)

<신 설>

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소음대책사업
- 6. 주민지원사업
- 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 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 대책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.

- 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사업
- 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 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학교

- 나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렁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
- 다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 11호에 따른 노유자(老幼 者) 시설
- 4.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
- 5. 그 밖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 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
-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·지원사업의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·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주거·교육·의료·공공시설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의 변경 지정으로 인하여 제외 되는 지역 내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

<신 설>

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 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 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방음시설 설치사업
- 2.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
- 3.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
- ④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의3(주민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기 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주민복지사업: 공동이용시설 (도서관, 체육공원 등) 설치,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
  - 2. 소득증대사업: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20조(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<u>5.</u>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-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(이하 "소음대책 인근지역"이라 한다) 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제1항 에 따른 연차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) ① -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- 5.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-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